

감 사 원

심 사 결 정

분 류 번 호 2016-심사-532

제 목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구
대표이사 A
대리인 노무법인 ○○ 공인노무사 B

처 분 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하수급인 ■■■건설주식회사 소속의 할석공¹⁾ 망(亡) C(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07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청구인의 “■시 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 장 에서 근무하였고, 2009. 8. 16. 폐 암 으로 최종 확진을 받은 후 2015. 2. 15. 사망하였다.

나. 이에 재해자의 배우자 D는 2015. 3. 9.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12. 22. 청구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

1) 도로, 궤도, 전기, 토목 등의 공사현장에서 압축공기 및 유압식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돌, 지반 등을 파쇄 및 절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자

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자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라 업무상 질병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재해자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보험 적용사업자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관련 산재보험 적용사업자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업성폐질환연구소²⁾에서 2015. 9. 18. 처분청에 회신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서”에 따르면 재해자는 2013. 5. 1. 근로복지공단

2) 직업환경의학, 호흡생리학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폐기도 질환, 간질성 폐렴과 진폐증 등의 폐질환, 그리고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을 포함한 악성 종양 등 ‘직업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의 진단 기준 및 관리체계’ 등을 연구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연구기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 후 진폐 장애등급 제7급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병원 사체검안서에는 2015. 2. 15.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5. 10. 13. 작성한 재해조사서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15. 12. 9.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서(2015판정 제****호)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되어 있다.

(3) 재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할석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해자의 2004년 1월 이후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명세

근무기간	근무일수	소속 사업장	공사명
2004년 1월~8월	178일	(주)■■■개발	■■■ 신축공사
2004년 11월	17일	▲지구 △△	△△ 주상복합 신축공사
2006년 7월	5일	▶▶(주)	▷동 ▶▶ 2단지아파트 신축공사
2006년 11월~2007년 2월	7일	▼▼건설(주)	▽▽ ◀◀프라자 신축공사
2007년 4월	14일	■■■건설(주)	■시 아파트 재건축공사
2007년 5월~6월	13일	◁◁건설(주)	과학고 교사 신축공사
2007년 8월	4일	▼▼건설(주)	◆◆ 중앙연구소 증축 및 부속설비공사
2007년 10월	23일	◇◇토건(주)	◎◎ 주공아파트 재건축공사
2007년 10월~11월	10일	■■■건설(주)	●시 ○●아파트 재건축공사

(4) 처분청이 2015. 10. 13. 작성한 재해조사서(직업력)에는 “망인이 1985년

부터 2007년까지 약 22년간 건설현장에서 할석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연구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가 2015. 9. 18. 회신한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 자문 회신서”에는 망인의 사망요인에 대해 “망인이 45세 때인 1985년부터 22년간 건설현장에서 할석 작업을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된 후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와 별개의 업무상 질병인 원발성 폐암³⁾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15. 12. 9. 작성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는 “재해자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할석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 상병 및 사망이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3) 암세포가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직접 발생한 폐암의 종류를 말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업장에서 유해요인 취급·노출로 인해 발병한 경우 위 공단은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을 판단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i)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ii)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iii) 발병일시 또는 증악⁴⁾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의 순서대로 판단하되,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작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4) 증악(增惡)이란 기존의 질병이 자연진행 경과보다 급속히 악화되는 증상을 말함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폐암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할석공으로 잠시 근무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위 인정사실 “(2)항” 및 “(3)항”과 같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망인이 근로한 최종사업장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서 청구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로 적용된다는 점, ② 위 인정사실 “(5)항” 및 “(6)항”과 같이 직업성폐질 환연구소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이 근무했던 공사현장은 이미 최소한 7년 전에 없어진 현장으로, 작업환경이나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여 위 인정사실 “(3)항” 및 “(4)항”과 같이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위 공단이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라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을 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 11 . 03 .

[별지]

관계 법령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①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 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보험가입자)①~② (생략)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2007. 11. 21. 고용노동부 지침 제2007-31호로 제정된 것)

4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절차에 관한 처리지침

2 업무처리 절차

4 적용사업장 사전통보 및 의견 제출

- 재해조사 주관지사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경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아래 판단기준에 의해 적용사업장을 판단

※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 ③ 발병 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 사업장

※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②>③으로 함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